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1997. 7. 14.  
행정재무위원회

####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6월 25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7년 6월 26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5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97. 7. 9)상정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김종박)

##### 가. 제안이유

-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협평을 기하며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제정 경제원) 및 공유재산관리지침(내무부)상의 매각기준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한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안 제21조 제3항 제5호 신설)
  - 매각대상
    - 아파트형공장용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 공업단지개발사용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
    -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
  - 지원내용
    -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5년 이내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인하(안 제22조 제6항)
  -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인하

###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전문위원 : 허영훈)

동조례(안)의 개정은 '96. 6.30. 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관리제도와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국·공유재산관리제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무부 공기13330-83('97. 2. 5)호의 '9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과 서울재산 45500-909('97. 4.24)호로 전국 시·군·자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준칙이 시달된 바도 있으며, 더구나 동조례개정(안)의 내용은 현재의 국가경제 침체기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도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능률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어 따라서 동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 4. 審查結果 : 원안의 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26 |
|----------|-----|

제출년월일 : '97. 6. 25.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 국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며,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재정경제원) 및 공유재산관리지침(내무부) 상의 매각기준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한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허용 (안 제21조 제3항 제5호 신설)
  - ① 매각대상
    - 아파트형 공장용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 공업단지개발사용 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
    -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

② 지원내용

-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5년이내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인하 (안 제22조 제6항)

-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 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라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인하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완화 (안 제38조 제1호)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허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 이하, 시지역에서는 300㎡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4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중(기타 지역에서는 700㎡ 이하의 토지)로 한다.

### 3. 참고사항

가. 근거법규

지방재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

나. 협의사항 : 없 음.

다. 예산조치 : 없 음.

라. 조례(안) : 별 첨.

별 첨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 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제38조 제1호중 “기타 지역에서는 400m<sup>2</sup> 이하의”를 “기타 지역에서는 700m<sup>2</sup> 이하의”로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2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제21조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p> <p>① ( 생략 )</p> <p>1 - 3 ( 생략 )</p> <p>② ( 생략 )</p> <p>③ ( 생략 )</p> <p>1 - 4 ( 생략 )</p> <p>( 신설 )</p>  | <p>제21조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p> <p>① ( 현행과 같음 )</p> <p>1- 3 ( 현행과 같음 )</p> <p>② ( 현행과 같음 )</p> <p>③ ( 현행과 같음 )</p> <p>1 - 4 ( 현행과 같음 )</p> <p>5.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p> |
| <p>제22조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p> <p>① ~ ⑤ ( 생략 )</p> <p>⑥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연간대부 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p> <p>⑦ ( 생략 )</p>   | <p>제22조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p> <p>① ~ ⑤ ( 현행과 같음 )</p> <p>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p> <p>⑦ ( 현행과 같음 )</p>  |
| <p>제38조 (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p> <p>( 생략 )</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2. ( 생략 )</p> <p>3. ( 생략 )</p> | <p>제38조 ( 수의계약에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p> <p>( 현행과 같음 )</p> <p>1. -----<br/>-----<br/>-----<br/>-----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2. ( 현행과 같음 )</p> <p>3. ( 현행과 같음 )</p>   |